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선거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0조의2(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¹⁾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위원 및 직원(이하 “선거위 직원등”이라 함)이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1)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법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등이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 직원등은 의무적으로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을 밝히며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있는 등 선관위 직원등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선관위 직원등이 선거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 등에서 선관위 직원등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련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선거관리의

2) 시사저널(2024.10.18.),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처벌규정 없어 법 제정 시급”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선거인 및 후보자 등의 선거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특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등도 행위의 경중, 위반조항의 성격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분없이 범죄 구성요건을 동법을 위반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선관위 직원등에 대한 벌칙 규정》

구 분	구성요건	벌 칙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0)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등	7년 이하의 징역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賈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등	10년 이하의 징역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239)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구 분	구성요건	벌 칙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40)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 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때 선거벽보,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 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침해죄 (§24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247)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투표죄 (§248)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때	7년 이하의 징역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248)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272조의2제1항3)에 따른 선거범죄의 조사업무”

3)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
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
·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로 한정하여 처벌 대상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제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임.

한편, 개정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 제123조4)에서 이미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2395)조에서도 이미 선관위 직원등이 직권남용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시대적 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현행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조사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직선거법」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 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범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문 의 처
02)6788-5336